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류제출을 사전 방문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 시 당첨자 자격검증 및 계약을 위한 필요 서류 작성도 동시에 진행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당첨자 외 동반 1인 입장 가능)

## □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구 분	일 시	장 소
당첨자 서류 제출	2021. 07. 23(금) ~ 2021. 07. 29(목) 10:00 ~ 17: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86 더샵 수성오클레어 견본주택
정당계약	2021. 08. 01(일) ~ 2021. 08. 04(수) 10:00 ~ 16:00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구 분	해당 서류	발급 기준	확인 사항
공동 서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필수 서류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2020.07.02 ~ 2021.07.02까지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후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입양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자 추가 서류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